

# FTA 원산지증명서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발급기관 선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f Improvement of Issuance Authorities Choice for efficiency of FTA Certificate of Origin

최준호(Jun-Ho Choi)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 경제학박사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선정의<br>문제점과 개선방안 |
| II.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대한<br>이론적 고찰 | V. 결 론                               |
| III. 국내외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br>현황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wished to inspect about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authorities subject in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mode by spread of FTA, and investigate about improvement plan of curr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authorities choice for smoothness trade business our country in FTA age to be expanded gradually.

Fundamental purpose and meaning of FTA strengthen industry competitive power of two countries because expand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agreement conclusion country, and is expected to esteem agreement target department's estimation at FTA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subject choice because is meaning that strengthen trade competitive power, and raise trade company's convenience.

Therefore, our country FTA representative authorities is recognized authoritativeness and stability from trade company and trade connection authorities, and is suitable in legal application or institution that can propel with consistency about policy propelled hereafter has to be chosen, FTA agreement country is representative authorities that recognize, and to issue from customs services which is a government agency which can progress business is place of origin issuance business and the place of origin examination, is expected to become more and more effective.

Key Words : FTA,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Authorities, Preferential Tariff

## I. 서론

최근 FTA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과 현재 발효중에 있고,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 2008년에는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EU, 캐나다, 인도 등과 협상타결을 위해 계속 추진 중에 있어 2010년에는 교역량의 70%정도가 FTA 체결국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대로 FTA가 체결되면 교역규모가 확대되어 수출입물량은 크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세율이 무세가 되거나 낮아 진다해도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내국세는 징수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세수와 통관업무는 늘어나겠지만 감면, 환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세율이 무세가 된다 해도 FTA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산지를 심사해야 하고, 원산지 심사를 위하여는 정확한 세번 분류의 필요성도 커지므로 통관절차는 복잡해 질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진다.

한·아세안 FTA 이행을 위한 이행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에는 원산지증명서(C/O)발급기관을 세관으로 단일화하였으나, 산업자원부가 상공회의소도 발급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상공회의소도 포함되었다.

그동안 한-칠레, 한-EFTA와 한-미 FTA에서는 자율발급제를 채택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한-아세안 FTA에서는 민간기관인 상공회의소가 포함되어 공신력상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협정상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현재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FTA의 확대에 인하여 나름대로의 자국책을 마련하여 일반 및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상공회의소는 세관에 비해서 사전검증체계가 미약하며, 무역업체와의 업무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FTA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향후 EU, 중국, 호주, 캐나다, 인도 등과의 FTA 협상에서도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양당사국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로 상공회의소의 포함여부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 II.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FTA 원산지증명서의 중요성

원산지란 제품이 생산된 나라 또는 국적을 의미하며,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가와 중요한 공정 수행국

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FTA 체결국가간에 원산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국일 때에만 특혜관세의 혜택이 있고, 역외국일 때에는 특혜관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원산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관세법에서는 주로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두고, 대외무역법에서는 주로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규정하는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어느 국가와의 무역촉진을 위하여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제도로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WTO 및 UN의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제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 위한 양허관세제도 등 주로 관세법령상의 원산지규정을 말하며, 이는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관세양허제도로 구분된다.

특혜원산지규정 가운데 원산지증명 확인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FTA 체결국간 교역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최종소비자를 보호하고, 교역기업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FTA 발효국가와는 FTA 원산지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2-1〉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수혜(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

발행코드	특혜 공여국	증명발급
A	남북교역	세관, 상공회의소
B	캐나다GSP	세관, 상공회의소
B	러시아연방GSP,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세관, 상공회의소
C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GSTP)	세관, 상공회의소
D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TNDC)	세관, 상공회의소
E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양허관세	세관, 상공회의소
G	한-칠레 FTA	수출자 자율발급
H	한-싱가폴 FTA	세관
I	한-아세안 FTA	세관, 상공회의소
J	한-EFTA FTA	수출자(송품장)

자료 : 관세청,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설명자료”, 2006, p.17.

원산지 규정은 수출의 경우 특혜관세를 부여 받고자 할 때와 수입의 경우 모든 물품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47개 세관과 65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다만,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중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에 한한다.

협정 체결국간 교역 시 수출입 화물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상대국으로부터 협정을 충실

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관과정의 지연 및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데, 수출국의 경우에 통관과정 이전에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역제품 자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원산지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국의 경우에 원산지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양허 혜택을 부여하고 수입함으로써, 저가상품이 난립할 수 있는 우회수출을 방지하고 내수산업을 보호하여 자국의 안정적 국민경제 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다.

##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국내 법령의 규정

### 1)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령

한-칠레 FTA에 있어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요건에 따라 직접 발급하는 원산지증명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고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제공한 원산지통보서를 근거로 수출자가 작성한다<sup>1)</sup>.

### 2)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의 제①항에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하고 있다.

또한 제②항 제1호의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한 것”과, 제②항 제2호의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3)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제①항「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1)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제②항에서는 제1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싱가포르 관세당국으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정하였다.

## (2) EFTA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제①항에서는「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또한 제②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2 제2호 가목 품목번호 제0406.90.0000호 및 동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③항에서는 제2항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스위스치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 (3) 아세안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제①항에서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제②항에서는 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하였다<sup>2)</sup>.

2)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캄보디아 상무부,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인도네시아 통상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라오스 통상산업부,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미얀마 상무부,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필리핀 세관,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싱가포르 세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베트남 통상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 3) FTA 관세특례법을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FTA 관세특례법을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3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제①항에서는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제②항에서는 싱가포르와의 협정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하며, 제③항에서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은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④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 또는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서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 1)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세관과 상공회의소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이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 및 심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교부하고 있다.

세관은 그동안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수출입 교역제품의 반입과 반출 시 원산지 심사업무는 교역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하자발견 시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서명 등록된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하여, 원산지 규정 충족여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7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제①항에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되,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②항에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장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발급기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법령에 규정된 자가 법령에 정해진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되어 진다.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며, 원산지증명

서의 자율발급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이다. 이때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은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FTA 체결국가의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은 한-싱가포르와 한-아세안 FTA에 한하고, 자율발급은 한-칠레와 한-EFTA, 그리고 한-미 FTA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 및 수입자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류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채택하였다. 당초에는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려고 하였으나 무역업계의 편의제고 차원에서 수입업체도 원산지증명을 허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하였다.

현행 국내 FTA관세특례법령에서도 수입업체의 원산지신고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칠레, 호주, 중남미, 싱가포르 등과의 FTA에서 수입자 원산지자율증명제를 도입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및 유효기간은 협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것을 따라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기관이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에 변경된 때에도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한-싱가포르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 및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되며, 기관발급 증명서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한-아세안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와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 받은 자가 된다.

원산지증명서를 사전발급신청하려는 자<sup>3)</sup>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정해진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발급신청하려는 자<sup>4)</sup>는 FTA관세특례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로서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수입신고 세관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확인방문 이유 및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통지받은 예정방문기간에 방문확인을 받기 곤란한 때에는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게 통보하고 방문연기 요청을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A"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의 경우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B"로 기재하여야 한다.

### Ⅲ. 국내외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현황

#### 1. 우리나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

#####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한-칠레 FTA특례법의 제10조(원산지증명서의 요건)에서 정의하고 있다.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의 명의로 작성·서명된 것(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원산지통보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통보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품명·규격 및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 서명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생산자의 휴·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통보서를 발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을 토대로 수출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한-칠레 FTA의 원산지 규정에서 칠레의 교역제품은 대부분 농산물이므로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자율발급제를 채택하였다.

##### 2)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부속서 5A(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제5장(통관절차)의 목적상 협정에서 정한 기관 및 승계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승인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발급기관에서 이를 심사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주체는 수출자가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자국의 법률 및/또는 규정,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을 하고,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세관, 그리고 자국의 법률 및/또는 조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타방 당사국 수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작성·서명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한-싱가포르 FTA 제5장 부속서 5A에서 지정한 발급기관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자발적이지 않은 실수, 누락 또는 합리적인 이유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소급발급이 가능하다.



### 3) 한-EFTA FTA

한-EFTA FTA에서는 부속서 1의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제15조(원산지신고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EFTA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는 대신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해당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서명하거나 별지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된다. 다만, 스위스산 치즈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하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기관발급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 4)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서 정의하고 있다. 제1조 발급 기관에 대한 정의에서는 수출당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competent authority designated by the government)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2조 발급기관에서는 상대국에 통보되지 않는 공무원(official)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당국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4조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서는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수출되는 물품과 원산지증명서가 일치 하는 지 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수입국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 발급기관은 구체적이고 포괄적(detailed and exhaustive)으로 해명(clarification)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표 3-1> 한국의 FTA 체결국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비교

체결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한-칠레	수출자자율증명
한-싱가포르	기관발급제(싱가포르 : 세관, 우리나라 : 세관·상공회의소)
한-EFTA	수출자자율증명(단,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물품의 송품장도 인정

한-아세안	기관발급제 * 싱가포르(세관), 캄보디아(상무부), 인도네시아(통상부), 브루나이(외교통상부), 필리핀(세관), 미얀마(상무부),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베트남(통상부), 라오스(통상산업부), * 우리나라 : 세관, 상공회의소(단, 개성공단 물품은 세관에서만 발급)
한-미	자율증명(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자료 : FTA 체결국가와의 협정내용을 참고로 하여 저자가 직접작성.

### 5) 한미 FTA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요건에 따라 직접 발급해야 한다. 그동안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였으나,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근거서류가 중요시되는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수출자의 경우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자의 경우에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가 있어야 한다.

## 2. 해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

### 1) 주요 교역국의 원산지제도

#### (1) 미국

미국의 특혜원산지규정은 쌍방적 특혜규정으로서 NAFTA 및 그 이행법, 이스라엘, 싱가포르, 요르단, 칠레, 호주 등과 FTA 협정상 원산지규정이 있고, 일방적 특혜규정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카리브해 연안국에 대한 특혜제도, 미국 속령 특혜제도상의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관련이 있는 NAFTA 규정은 원산지증명, 원산지확인, 허위증명 등에 대한 제재, 원산지 사전심사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도 협정 및 이행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일반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으며, 미국 속령 특혜관련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1회 수입 건에 대하여 유효한 것과 동일물품의 2회 이상 수입 건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 특혜관세 신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로부터 4년 동안 가능하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출자가 물품의 생산자가 아닐 경우 수출자는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지식과 이에 관한 생산자의 서면진술을 근거로 작성하거나,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작성한다.

## (2) 일본

원산지증명서 분야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과 절차,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로 대별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원산지증명서는 336개 전국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으며, 일-멕시코 및 일-싱가포르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20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다(경제산업성 지정). 이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제산업성에 기관지정을 신청하고 경제산업성은 기준을 충족하는 상공회의소를 선정하여 인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멕시코 FTA는 신청자가 사전 등록한 후, FTA 등록번호를 취득하고 패스워드를 설정한 후에 원산지판정과 등록의 과정을 거쳐,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신청·발급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싱가포르 FTA에서는 신청자가 사전 등록을 통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 있어, 각 나라와의 FTA 협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EU

EU는 관세법 및 관세법 집행규칙에 특혜 및 비특혜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원산지기준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관과 제반 절차를 모두 포함한 일종의 통관규정이다.

EU의 원산지증명 발급절차는 유럽상공회의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으며, EU 회원국 중앙상공회의소 및 지방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다(일반 및 특혜원산지증명서 모두 동일함).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원산지증명을 신청하는 화주, 대리인, 그리고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며, 원산지의 표시는 “European Community”와 필요에 따라 개별 국가의 이름이 병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 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가 원산지의 확인에 불충분할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거부되기도 한다.

## (4) 호주

호주는 모법인 Customs Act 1910과 시행령인 The Customs Tariff Act 1995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상세내용은 관세청 공고로 대신하여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특혜와 비특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특혜규정은 협약에 의거 상대방국가에 적용하며, 기타는 비특혜 규정을 적용하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국가의 위임에 따라 호주상공회의소에서 발급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대행기관이 발급업무를 맡고 있는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와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의 FTA 현황을 고려하면 자국의 발급방식이 중요하지만, FTA는 국가간 교역이므로, 상대국의 협상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해외 FTA 사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기관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EU와 일본이 있으며,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EU, 일본, 호주 등은 기관의 공신력과 문제발생시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주요 관점으로 해서 원산지증명발급방식을 기관발급제로 채택하고 있다.

기관발급제를 채택한 FTA는 일본-싱가포르, EU-멕시코, EU-칠레, 싱가포르-호주 등이며, 자율발급제를 채택한 국가는 미국, 중남미 국가가 대표적이다. 현재 자율발급제를 채택한 FTA는 싱가포르-미국, 싱가포르-뉴질랜드, 싱가포르-EFTA, 멕시코-EFTA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FTA를 다수 체결한 국가와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FTA 체결이 많지 않은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기관발급제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3) FTA 국가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및 주요 이슈

칠레와 멕시코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자율발급제를 주장하였으나, EU의 요구에 따라 FTA 체결시에는 기관발급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멕시코는 NAFTA 관련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FTA의 경우에는 상대국가의 요청에 따라 기관발급제를 채택한 경우도 있다.

〈표 3-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주요 이슈

FTA 체결국가	발급방식	주요 내용
일본-싱가포르	기관발급제	- 일본은 기관의 공신력과 향후 문제해결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기관발급제를 주장
일본-멕시코	기관발급제	- 멕시코는 중국산 저가제품의 미국을 통한 우회수출에 국내산업의 피해를 경험하여 기관발급제 채택하였으나, NAFTA관련 원산지증명서는 자율작성제
EU-멕시코	기관발급제	- NAFTA에서 중국제품의 우회수출이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기관발급제를 채택함

EU-칠레	기관발급제	- EU의 강력한 요구로 기관발급제로 합의함
싱가포르-호주	기관발급제	- 영미법 계통의 국가 중 유일하게 호주는 기관발급제를 주장함

자료 : 인터젠컨설팅, “한-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4, p.63.

#### 4) 기관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발급 사례

양허세율관련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자국의 조세정책, 산업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표 3-3〉 기관발급시 발급기관 사례

국 가	발 급 기 관
EU 및 EFTA	- 원칙 : 세관발급(이스라엘 등 대부분의 FTA) - 예외 : 멕시코, 칠레(정부인증기관), EFTA-싱가포르(자율증명)
중국	- 일반 C/O : 국제무역촉진위원회(상공회의소에 해당) - 양허용 C/O : 출입경검험검역국(Entry 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Bureau, 국가기관)
싱가포르	- 일반원산지증명서는 정부인증기관(상공회의소)과 세관발급 - FTA 등 특혜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에서만 발급
아세안	- 특혜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국가기관으로 규정 - 세관발급 2개 국가(필리핀, 싱가포르), 산업부(무역부) 발급기관 8개
대만	- C/O발급기관은 정부기관 13개, 재단법인(대만섬유연합) 1개, 상공업단체 55개 등 총 69개 기관에서 발급 - 양허세율과 관련한 특혜C/O는 국가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음

자료 : 관세청, “FTA 이행특례법령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검토, 2006, p.2.

## IV.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민간기관 발급시 예상되는 문제점

FTA 협정을 이행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인 FTA 원산지증명서를 국가공인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인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 1) 우회수출 증가로 인한 신뢰성 저하

EU, 미국, 멕시코의 사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듯이 형식적인 원산지심사 및 확인에 따른 우회수출 증가로 국가신인도 및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 최근 한-EFTA FTA 특혜관세 적용 10개 업체 중 5개업체에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발생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한-EFTA FTA의 경우는 수출자 자율방식이기는 하지만 원산지증명서가 특별히 정해진 양식 없이 송품장 기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제3국 중계인을 통해 무역거래를 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sup>5)</sup>

결과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없는 중계인이나 중계인에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에서도 싱가포르를 이용한 중계무역의 경우에 잘못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 제5차 협상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상공회의소를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원산지의 공신력 확보차원 및 통관절차상의 효율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본적인 고유 업무이고, 발급정책을 결정하는 사항도 산업자원부 장관의 업무이며, 우회수입 방지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신뢰성을 위해서 기관 발급제 채택과 상공회의소가 발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반대로 관세청은 FTA 체제하에서는 교역량이 확대되므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에서 세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산지 확인업무는 FTA 이전 절차와 동일하므로 무역원활화를 지원하여 무역업체가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아세안 제5차 협상 훈령은 “세관 및 상공회의소 2원 발급체계 유지 방안을 모색하되, 아세안측이 정부기관에 의한 C/O발급을 견지할 경우 수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아세안 측은 협정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닌 기관을 전제로 “정부인증 기관” 문구를 수용한 것이며, 훈령(대외경제장관회의의 결과)이 아세안과의 합의 내용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협정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신력이 저하되면, 수입국 세관에서 우리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통관이 지연되고, 엄격한 원산지 사후관리형식을 취함으로써 협정국간 교류가 적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FTA 협정국과의 무역경쟁력 약화

최근 FTA 협정상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수출입업체들의 협정이행에 따른 오류가 계속 발생되고 있

5) 조세일보, “FTA의 복병” 원산지증명서 잘못돼 관세 2억 추징, 2007.11.21.

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적법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싱가포르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싱가포르 FTA 협정에 의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싱가포르 FTA에서 인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발급권한이 없는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추징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상이하다. 그러나 아세안 각 국가들은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세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원산지증명서처럼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부분 협정불이행으로 인해 추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협정에서는 공무원(official)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공회의소의 직원은 공무원으로 보기 곤란하고, FTA관세특례법령에 위임 규정도 없다는 주장이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은 대외무역법이 아닌 FTA관세특례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외무역법령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목적이 다를 수 있고, 협정의 이행 및 대외신인도제고를 위해 FTA관세특례법령은 대외무역법령에 비해 엄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하고 있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FTA 협정은 국가간 협정이라는 개념을 인식할 때 협정대상국과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선정시 협정대상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다.

### 3) 전문지식 결여로 인한 형식적인 심사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세번 변경여부의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상공회의소의 서류위주의 형식적인 원산지 검사 등은 우회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데, 원산지증명(확인) 및 검증과정에서 수집된 기업정보 및 생산원가 등의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고, 특히 원산지증명서의 불신으로 인한 과도한 현지 직접 검증시 우리기업에 대한 핵심기술의 유출 개연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수출신고의 2원화, 원산지확인검사와 수출검사의 2원화 등에 따른 시간·비용이 낭비가 예상되며, 협정 문언상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수출되는 물품과 원산지증명서가 일치 하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기관과 수출물품 검사기관은 일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역시 상공회의소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수출 물품의 검사, 원산지의 검증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아세안 FTA 협정(제4조)상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당해 물품의 수출전 검사(pre-exportation examination)를 수행하고 동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검사 권한이 없는 민간기관이 수출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협정에 위반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세청 역시 한-아세안 FTA 협정 제4조에서는 C/O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상공회의소 직원은 수출물품을 검사할 권한이 없으며,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인터넷발급시스템을 구축·시행함에 따라 접근성·편의성이 상공회의소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4) 원산지증명서 발급 혼란에 따른 업무량 증가

상대국 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통한 무역업체의 업무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미흡하여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지만, 국가기관간에는 연락창구가 개설되어 있어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아세안 통관절차 협정문 제23조 등)하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지방상공회의소간의 통합 및 표준화 되지 못한 운영규정은 수출입업체가 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지방상공회의소는 업무의 성격은 동일하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운영 시에 증명발급수수료 정책 등 일부 운영규정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여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제52조(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의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이 세관보다 상공회의소를 선호하는 이유가 접근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공신력이 낮아 아세안 세관에서 거부당할 위험성이 높아, 결국 우리 수출업자의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sup>6)</sup>

결과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지방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에 차이가 있어, 무역업체의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선정의 개선방안

### 1) 우회수출 예방을 위한 신뢰성 있는 발급기관 선택

한-싱가포르 FTA 체결시 가장 크게 우려한 문제는 싱가포르를 통한 우회수출 증가로 인해서 중국과 동남아 제품이 중계무역 국가인 싱가포르를 통해 국내시장에 우회수입 될 가능성이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기관발급제를 채택하면서 상당부분 해소했다.

그러나 기관발급제는 자율발급제도에 비해 신뢰할 수 있는 점은 높으나 통상 발급기관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에 실제 확인과정을 생략하고 단순 날인한 증명서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 관세청, "FTA 이행특례법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검토", 2006, p.5.



이러한 현실속에서 원산지확인 검사 기능이 없는 기관이 발행한다면 수입국의 원산지심사로 인해 국가신인도 및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 저하는 당연시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기관이며 원산지확인 검사 기능을 모두 갖춘 기관인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FTA 상대국가에서도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상공회의소는 FTA 상대국가에 모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TA 상대국가에서 모두 원하는 세관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2) FTA 협정대상국을 고려한 발급기관 선택

FTA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협정체결국가간에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므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선정시 협정대상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한 기관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싱 FTA 및 한-아세안 FTA에서는 선진시스템을 갖추고서 신속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선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수출자율증명제로 인한 자가발급이 어려운 국가로서는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FTA 협정에 따른 효과를 크게 거둘 것으로 보인다. 즉, 한-싱 및 한-아세안 대부분의 국가가 협상 초기에 원했던 세관을 발급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양국간의 FTA 협정에 따른 무역경쟁력 강화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TA 협정이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세관의 경우에 국가기관간 연락창구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실질적인 원산지확인검사를 위한 발급기관 선택

재정경제부는 현재 상공회의소에 원산지 발급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수출 검사권 부여는 현 법적 체계상 곤란하며, 또한 무역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관의 사후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 최근 FTA체결국가간의 흐름이 기관발급제의 경우에 정부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7)</sup>

향후 한-미 FTA 발효 등 FTA 확대에 따라 앞으로 원산지판정기준 등과 같은 실질적인 사항들이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무역업체들은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역업체가 수입물품의 경우에 원산지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sup>8)</sup>”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7) 판세청, 전계자료, 2006, pp.3-4.

8) 원산지사전심사제도는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FTA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FTA 협정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발급기관에 대한 신뢰성 문 의도 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물품의 경우이지만 원산지관정을 미리 할 수 있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민간기관인 상공회의소에서는 불가능하고, 업무가 가능한 곳은 현재 세관밖에 없다는 점도 발급기관 선정시 중요한 고려대상일 것이다.

#### 4) 무역업체 편의를 위한 발급기관 선택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자 하는 수출기업에게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측면이 고려의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업무에 있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대부분은 수출통관업무의 93%, 수입통관업무의 97%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사가 그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는 신청인 구분란에 관세사 표기부분을 두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의 원활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의 대리를 하고 있는 관세사 입장에서는 상공회의소를 이용하기 보다 세관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FTA 원산지증명서는 웹상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세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업무를 담당해왔던 세관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지방상공회의소간의 통합 및 표준화되지 못한 운영규정도 수출입업체에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무역업체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발급기관으로 세관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 V. 결 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FTA 협정대상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FTA는 협정을 체결한 양 당사국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협정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와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

FTA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협정체결국가간에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므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선정시 협정대상국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무역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원활한 무역흐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무역업체의

업무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결과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차이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일반 무역거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FTA 원산지증명서는 양당사국간의 협정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검증과 확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발급해야 FTA의 체결국가와의 사이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교역국으로 하여금 FTA로 인해 발생하는 원산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통관절차의 원활화 및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FTA가 적용되더라도 통관업무를 증가시키지 않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발급주체가 선정되어야 FTA 특혜관세 혜택에 따른 사후관리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TA로 인해 제공받는 관세특혜 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문제해결 시 필요한 서류 등의 보관체제가 용이한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FTA 대표기관이며, 무역업체 및 무역관련 기관으로부터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법적인 적용에 적합하거나 향후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FTA 협정국이 인정하는 대표기관이며, 원산지 발급업무와 원산지심사, 확인 등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인 세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는 결과적으로 기존에 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는 원산지관련 규정과 원산지결정기준, WTO와 FTA 원산지규정의 이원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중 발급기관 선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중점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향후 FTA 체결을 앞두고 있는 국가와의 협상에 미흡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향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원산지심사의 동향 및 사례를 중심으로 원산지위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관세청, “한-아세안 FTA 설명회 자료”, 2007.
- \_\_\_\_\_, “FTA 이행특례법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검토”, 2006, p.2-5.
- \_\_\_\_\_,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 설명자료”, 2006, p.17.
- 김규태·한홍렬, “한·일 FTA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주요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4.
- 대한상공회의소, “주요교역대상국의 원산지제도”, 2007.
- 성운갑, “FTA 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인터젠컨설팅, “한-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4, p.63.
- 조세일보, “FTA의 복병 원산지증명 잘못돼 관세 2억 추정”, 2007.11.21.
- 최준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관세사의 역할제고 방안”, 「관세학회지」, 제8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7.
- \_\_\_\_\_,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 \_\_\_\_\_, “FTA 확대에 따른 상품협정관세적용 오류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상품학회, 2007.
- 한국관세사회, “FTA에 대비한 관세사 전문교육”, 2007.
- \_\_\_\_\_,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2007.
- Cao, Shi Gong, “Progress of China-ASEAN FTA and China’s Position”, International Forum on Northeast Asia Trade Policy Cooperation, Nanjing China, 2002.
- Crawford, Jo-Ann and Roberto V. Fioretino,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cussion Paper No.8, 2005.
- Hai Wen, “A Bilateral FTA or a Trilateral FTA?”, Paper for the 2001 KIEP/NEAEP Conference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Honolulu, Hawaii, 2001.
- KIEP, Korea-ASEAN Joint Studies Materials, 2004.
- Wattananpruttipaisan, Thitaph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nterprise Development : Some Policy Issues and Options in ASEAN.” *Asia-Pacofoc Development Journal*, Vol.11, No.1, 2004.
- [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7823](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7823), “South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minus Thailand-to take effect June 1”, 2007.
- [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6232](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6232), “South Korea to Introduce Import Safeguards For FTA With ASEAN”, 2006.
- [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5672](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5672), “ASEAN countries accept N. Korean park in free trade deal with S. Korea”, 2007.